	INDEX	INDEX 기준	개념(설명)	설명
9.12 국제거래의 정의	국제거래법 개관 국제거래를 어떻게 정의할것인가?		서로다른 국가의 사람들끼리 하는	서비스
국제거래의 문제	INTRO	객체에 따른 정의 1. 국가별 준거법 상이 2. 분쟁해결 어디서?	서로다른 국가의 물품이 이동을 하는	물품
국내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현실매매" "격지자간 거래"	대금지급 시점 = 물품인도 시점 동일 대금지급 시점 != 물품인도 시점 물품 운송	운송비는 누가 부담?/ 매도인(채무자)가 부담
				위험이 언제부터 인도되는지?/
			물품에 대한 위험 존재	불특정물의 경우 매도인(채무자)이 매수인(채권자)에게 인도한 시점에 위험이 이전됨 (지참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급지급 시점 애매함 분쟁이 일어났을때 해결장소 애매함	물품 받고 대금지급? 받기전 대금지급?- 분쟁해결 어디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한국이 배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율 수입자의 NONPAYMENT RISK	베트남 동화(VND)로 할 경우 한국 수출자는 환율변동 위험에 놓인다 앙국가 통화 사용X 수입자가 물품만 받고 대금거급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의 부담으로 수입자에게 신용장을 요구할수 있다. 위험에 대한 담보로 수출보험을 들수 있음 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수출보험	사업위함: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 수입자가 상업위함: 수입자의 지금지체, 지급불능, 마켓클레임 문제가 있을수 있고 수출자가 상업위함: 인도불능, 인도지면, 하자있는 물품인도 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
			준거법	국가위험: 국가의 문제(혁명, 국가전복, 수출입제한) 계약서에 베트남 준거법 따르자고 할 수 있으나, 베트남에서 대마는 합법이나 한국에서 기본적인 공공풍속에 저촉되기 때문에 마약부분은 제외되고 적용된다.
				국제사법을 통하여 준거법 결정하고 있지만, 준거법 결정하는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효력은 없고, 계약서 명시필요 <b>따라서 법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b> 계약서에 어느나라 준거법 따르자고 적어놓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한다.
			분쟁해결 어디서?	- 국제경제법/국제거래간 국가의 개입에 대한 규범(공법) 국제법/국가와국가, 국가와국제기구간 관계에 대한 규범(공법) 국제사법/어디 준거법을 따라야 하는가?(공법)
국제거래법의 법원(source of law)			법원(source of law) 일밥법과 특별법	국제거래법이 존재하는 형식 CISG는 상거래(-민사거래)(기업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CISG가 민사법보다 우선적용된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강행법과 임의법	이자제한법(최고를 25%로 제한)은 강행법, 민사법정률은 임의법(통상 5%) 잠정적으로 모든 나라의 준거법이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음 국제협악, 조약, 원칙 등 다양한 법이 법원이 될 수 있다.(CISG, UCP, 인코텀즈(규칙)-이것도 국제상관습이라고 보아 실체법(<->절차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국가들도 있음. 따라서 이런 국가들에서는 인코텀즈도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된다) 인코텀즈같은 통일규칙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제거래법의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약/현약	국가간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합의, 협약은 조약을 국제기구가 만들었을때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써있음 (한미FTA) 미국에서는 CISG가 동일상법전보다 우선한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CISG는 민상법. 미국은 통일상법전을 주법으로 선택. CISG는 미국 연방법(FEDERAL LAW)이기 때문에 주법(STATE LAW)보다 우선한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형태인 국제물품매매에 대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인 CISG가 일반법인 통일상법전보다 우선한다.
			관련 국제기구들 역할	
9.19 무역거래에 쓰이는 용어 정리	국제물품매매 무역거래의 주계약과 보조계약		물품매매계약/서비스제공계약 설비수출계약/해외공사계약/선박건조계약	
			판매점계약/위탁판매계약	본점이 완전히 파는것(수탁자 책임)/ 본점(위탁자)에서 팔아달라고 하는것(위탁자 책임). 본점이 약함(을). 따라서 판매되지 않은 물픔은 SHIP BACK함.
			신용장 방식	수입자의 대금지급 NONPAYMENT RISK존재: 은행이 수입자대신에 대금지급을 하겠다. 은행은 대금지급의 RISK를 지는대신, 수입자에게 채권적 지위+수수료를 갖게됨
	대외무역법상 수입,수출	무역의 대상	물품, 서비스, 전자적 형태(무체물)의 이동	
		물품 서비스	장소적 이동 기준 당사자 주체 기준	국내에서 국외로 물품의 장소가 이동하면 수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출 
		거주자/비거주자 거래의 원인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거주자: 6개월이상 거주, 비거주자: 2년이상 비거주
	관세법(절차법) 수입,수출 CISG	무역의 대상 무역의 대상	물품 ONLY 물품 ONLY	
	유무상 여부에 따른 수입,수출 여부		"서비스 유상일것"	서비스, 전자적 형태(sw)가 무상인 경우 무역으로 취급하지 않음(당연한거지)/물품의 경우 유무상 여부가 무역인지에 대해 상관이 없다.
	특정거래형태		물품의 이동 != 대금의 이동	과거 특정거래형태의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끔 했으나, 우리나라도 무역선진화가 됨에 따라 이것을 악용하는 무역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2014년 폐지됨.
				따라서 현재는 우리나라도 사전승인없이 특정거래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거래형태를 용인하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확인해야함.
7711FEMMO 720/20		HO BROWN TO TO TO THE	중계무역	물품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 수입과 상관이 없다. 그러나,,,, 중립지역: 수출입 통관신고가 유메된 지역. 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자유무역시장. 통상적으로 수출의 진흥을 위해 마련해놓음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국부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바,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진흥하기 위해 "수출"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의 정의(1)		법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함	"국제" (당사자 기준)	CISG: 당사자 영업소 기준/여기서 말하는 영업소는 본사, 해외지사, 해외사무소를 포함.

		"물쯍"	대외무역법: 당사자 국적 기준 CISG목적은 법적용의 불학실성을 제거하여 통일규칙을 제정하는 것.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무역진흥을 도모하여 국내경제발전 촉진 두개다 준거법이므로, 어떤 법을 준거법으로 할지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따져야 함. CISG: - 대외무역법: 물건(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 부동산(토지 혹은 토지위의 정착물) - 지급수단, 채권, 증권, 자본(*) = (인법상 동산 - *) 소유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 영국은 넓게는 재산권을 말하기도 함
국제물품매매계약 개괄	1. 국제물품매매? 2. 계약의 성립여부 3. 계약의 위반여부 4. 위반당한 상대방의 구제권리		이기는 MB에는 게난건을 즐었기고 B
(CISG)계약의 성립 여부(2)		계약 (1)법적인 권리의무	합의(1) + 법률효과(2) 법적인 권리의무가 뭔데?/분쟁이 일어났을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때 나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мои	합의ONLY. 추상적인 내용으로,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함. 법적의무가 없다는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2)합의	청약(OFFER) + 승낙(ACCEPTANCE) 계약의 성립여부는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다:
		(3)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성립된다.) 계약체결목적(1)+특정인(2)+내용이 확정적(3)+구속의사(4) 내용이 얼마나 확정적이어야 하는가?/ 내용이 확정적이려면 물품, 수량, 대금 정도면 족하다. 상대방이 불특정인 일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간주하지 않고, 청약의 유인(INVITE)으로서 간주한다.
		청약의 종류	승낙기간 지정(1)+OFFER한 사람이 철회 안할거라고 신뢰할수밖에 없었다(2)+상대방의 신뢰에서 비롯된 행위(3): FIRM OFFER(확정청약) 승낙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한 청약: FREE OFFER(불확정 청약)
			여기서 "승낙하기 전"이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 이다. 즉, 승낙하기 전이라는 것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 아니라, 승낙통지를 보내기 전을 말하는 것이다. 승낙또한 도달주의를 택한다.
			CISG는 불확정청약(FREE OFFER)를 원칙으로 삼고 있음. COUNTER OFFER(반대청약) 어떤 사항을 변경했을때 반대청약이 되는가?/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장소,시기, 책임범위(지연배상금), 분쟁해결방식 물품 자체를 변경한 것은 COUNTER OFFER가 아니므로 기존 OFFER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4) 승낙 응답	계약체결목적(1)+제3자아님(2)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의사표시, 청약을 받았는데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채로 부가적인 또는 다른 조건을 포함하는 의사표시는 용답이 아니라 승낙이 되어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승낙이 아닌 응답(반대청약)이 되려면 청약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한다.
		청약의 효력	청악의 효력발생 시점: 도달주의 청악의 철회가능여부: 청약의 철회가, 승낙의 통지 발송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한다. 원직적으로는 철회가능(FREE OFFER)
		승낙의 효력	승낙기간 지정(1)+철회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신뢰할수밖에 없음(2)+그로인한 행위(3) 일때 철회불가능(FIRM OFFER) 승낙의 효력발생 시점: 도달주의 승낙의 철회가능여부: 불가능. 회수만 가능 승낙이 도달하기 전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도달한다면, 승낙은 회수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민법은 1.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하며(FIRM OFFER) 2.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으로 발송주의를 택하고 있다.
9.26	계약성립 끝부분+계약위반+구제권리	(5) 약인, 항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악인, 항변사유가 존재하면 계약 강행가능하지 않다. 예를들어, 마악계약은 공공풍속에 위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항변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강행가능하지 않다. 악인이란 계약의 원인이다. 악인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강행가능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영미법에서는 강행가능한 계약의 요건으로서 약인을 요구한다. 예를들어 중여의 경우 약인없는 계약으로서 계약은 성립하나 강행가능하진 않다.(UNENFORCABLE)
계약위반 여부(종류)(3)		계약위반의 3가지 기준	당사자의 "귀책사유", 물품인도기일 위반, 물품인도 하자, 대금지급기일 위반 인도기일,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1)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가능	물품인도 이행기일(선수금(선지급) 지급받은경우: 10일이내/ 명시되지 않은경우: 계약체결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 대금지급 이행기일/명시되지 않은경우: 물품(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동시지급원칙) 민법기준 불확정한 기한의 경우: 체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인지한 때에/ 명시되지 않은경우: 채권자의 적극적 이행청구 필요
		<ul><li>(2) 이행거절</li><li>(3)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불능</li></ul>	이행기일 이전에 이행거절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 당시에 이행볼능 -> 계약무효 원시적불능 알고도 계약체결했으면, 계약의 성립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녹음다시) 무효는 자동적 효력 소실. 취소는 적극적 효력 소실. 위 <mark>험의 이전?</mark> 후발적 불능: 계약체결 이후에 이행볼능 -> 계약위반책임(청구권)
-		영미법상 이행불능	객관적 불능: 누구도 이행할 수 없음/ 주관적 불능: 천재지변/ 계약의 좌절: valueless(o) impossible(x)
위반당한 상대방의 구제권리	수입자(매수인)의 구제권리 수출자의 물품인도기일, 물품인도 하지	(1)의무이행청구권(이행지체) (2)대체물인도청구권(불완전이행) (3)하자보완청구권(불완전이행) 부적합통지의무(2)(3)	하자가 본질적일때/본질적: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하자가 비본질적일때/비본질적: 본질적이지만 수리는 가능한 경우(판례) 수입자(매수민)이 하자를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기간내에 하자를 통지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물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하자있음으로 인정이 안된다.(매도인(수출자)도 불완전이행의 계약위반을 했으므로 risk-sharing을 해라는 의도)

			(4)부가기간지정권	수입자(매수인)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이후에는, 매수인은 그 기간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기다려야된다. 부가기간내에 매도인(수출자)이 이행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부가기간지정권의 목적은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5)계약해제권(시험에 나옴) 계약해제사유	주기건 전 중점과 그 국도 계측이 에에보는 것을 되어가 되면 국고이다. 해제권자의 일방적 계약해권리.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인정함. 요건: 본질적 계약위반 요건: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 부가기간지정 이후 이행불능, 이행거절의 경우
				민법기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행의 청구를 요구하지만 CISG는 이행의 청구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질적 계약위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기간 지정이후 이행불능,거절로 족하다고 봄
			계약해제권 유효기간	교통시 많은 하구는 구가가는 시장이구 이용을 스키르노 국어되고 B 물품인도지체의 경우 수업자(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인지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해제권 청구해야함 물품인도지체가 아닌경우(하자) 수업자(매수인)가 위반(하자)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부가기간 내에 이행거질(불)등 통지한 때
			(6)대금감액권	하자가 있는경우, "계약금액"에 대해서 "물품인도시" 가격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감액한다.
	수출자(매도인)의 구제권리	수입자(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	위 사례와 동일	특정이행청구권, 부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수입자(매수인)이 본질적계약위반 또는 부가기간내에 이행불능, 이행거절을 선언한 경우, 그 이후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상실된다.
				(주의)매수인이 본질적계약위반 이후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했다는 것을 매도인이 안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매도인이 이행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본질적 계약위반의 정도로 이행지체가 되어도 매도인이 이행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네?) 이행지체가 아닌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 부가기간내에 이행거절, 불능 통지한 때
	손해배상청구권		(1)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계약체결당시 대금을 받는 매도인이 알수 있었던 사실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음(나 이것도 손해고 이것도 손해야!X)
	E-11-11001E		(2)대체물 매수, 재매각	에 마이트 등 전에 파트를 보고 있다. 이 등을 보고 하다 전에 제공하다는 다 없음(다 다 시스트 전에도 하시고 전에 대공하)에 이익의 상실도 포함, 증명가능해야 함 계약해제가 요건
			(3)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게막해제가 요건. 대체물 매수또는 재매각이 없는 경우, 물품인도후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물품수형시 시가 - 계약금액 +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물품인도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계약해제: 계약해제시 시가 - 계약금액 +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0.17 인코텀즈	인코텀즈	인코텀즈의 목적	TRADE TERMS: 거래조건	동일한 거래조건이라도 해당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나라벨로 다르게 해석 될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고 무역거래의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거래기준에 대한 해석을 통일함으로서 무역거래의 통일성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별 준거법의 상이함에 따른 무역거래조건의 이질성을 방지하고자 인코럼즈에서 비용의 부담(운송비, 보험료, 적재비, 하역비), 위험의 이전(위험이전시기), 인도장소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인코텀즈 내 중요한 "기준"	인도시기 = 위험의 이전 시기 비용이 보다	리아나 우리(또이의, 우리파, 기계의, 제공에 인단(제공인단역기), 근무이도 곧 이렇게 곧 불파가 쓰러
		인코텀즈 11개 RULE	비용의 분당 EXW FCA CPT CIP	
			DAP DPU DDP	
			FAS FOB	<del>-</del>
			CFR CIF	
				SELLER는 RISK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INSURANCE가 규정된 부분임 CIP-ICC(A)로 담보범위가 높고, CIF-ICC(C)로 담보범위가 낮은 이유: CIF는 해상운송에 관한 규칙이라 위험부담이 적지만 CIP는 육상운송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보험의 실효성을 위해 CIP-ICC(A)로 올린듯 하다
		인코텀즈(규칙)과 준거법이 충돌 여부	(해결X)	CISG는 명시되었지 않아도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따르는 국가라면 적용이 된다.
				인코텀즈를 어떤 법(관습법)으로 본다면 명시되지 않아도 법으로서 적용될것이고, 법이 아니라면 법으로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는 FOB가 통일상법전에 명시되어 있음
		인코텀즈 장소		인코텀스는 관습법이다! 따라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따라야 한다! (미국,독일,프랑스), 우리나라는 약관이다! EXW/FCA SEOUL(출발지): 수출 CPT/CIP/DAP/DPU/DDP VEGAS(목적지): 수입 FAS/FOB BUSA(언적항)
		FCA일때 적재비용 누가?	free carrier 개념을 기준으로	CFR/CIF LA(도착항) 인도장소가 SELLER'S PREIMISE(안암)이라면 SELLER가 적재해야하나, 인도장소가 청량리라면 SELLER가 적재해줘야 할 의무는 없음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있지 않은 사형	물품의 소유권 이전시기, 소유권자 명시X	인도장소가 청량리라면, 안암에서 청량리까지 적재하고 운송하는 비용은 BUYER가 부담하는것이 원칙. 선하증권의 효력: 물권적 효력: BL을 넘겨주면 화물을 인도한것과 똑같다(물품인도) 화물이 인도되었더라도 아직 BL이 수출자의 수중에 있으면 화물의 소유권은 아직 수출자에게 있다.
10.03 선하증권(상업서류)	무역서류(BL) 선하증권의 정의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선하증권(BL) 상환증권성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선적 하였음을 증명하고, 물품과 선하증권을 상환하는 관계로서 인도하게끔 하는 유가증권
			지시증권성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처분증권성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금지가 기재되지 않는한 배서양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1				

			인도증권성(몰권적효력) 문언증권성(채권적효력)	
	선하증권의 종류		클린BL, 더티BL 파손화물보상장 서렌디BL	부지문구 예를들어,
			해상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환어음	환어음의 정의			
	환어음의 목적	환어음의 특징에 따라 1) 어음소송 2) 수출계약과 환어음은 독립적, 항변/ 당사자의 이익에 따라 1)수출자 2)매입은행	사유	
10.1 선지급방식	대금결제방식		선지급방식	
OA방식			선수금환급보증서 OA방식	
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이란 DP거래	특징: 은행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추심(받아낸다).
			DA거래	
			수출자에게 DP가 유리? DA가 유리? DA와 OA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NON-PAYMENT RISK/ CASH FLOW 공통점: 차이점:
			수출자에게 OA가 유리? DA가 유리?	
신용장방식			신용장방식이란	은행이 직접 대급지급책임을 진다.